

우리

나라 어촌은 과거 30년간 경제의 능률성과 효율성에 기준을 두고 어촌·어민 보다는 수산물 수출진흥과 원양어업 위주로 추진된 수산업 근대화 시책으로 인해 균형개발 보다는 생산과 효율을 지나치게 강조함으로써 도시 어항과 낙도, 벽지 도서어촌간에 국토공간의 불균형 개발현상이 심화 되었으며 연안어업과 근·원양 어업간에도 부정적인 결과가 심화되어 최근 우리 수산분야에도 농촌사회와 마찬가지로 어촌인구의 급격한 감소와 노령화, 부녀화로 우리 국토의 가장자리인 낙도, 벽지나 도서어촌을 지켜줄 젊은 후계세대가 없어 이를 계속 방치할 경우 멀지않은 장래에 어촌의 공동화 현상이라는 아주 심각한 문제에 직면하게 될 것이

다. 이러한 농어촌 사회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정부당국은 농발대책에 의거 농수산업의 대외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 기반을 구축하고 농수산물 유통구조 개선과 가공 및 수출을 지원함과 동시에 성장유망 품목을 집중 지원하여 품목별 경쟁력을 제고시킴은 물론 농어촌 소득원의 다양화와 생활환경도 개선하는등 농어촌에 활력을 불어넣어갈 계획이며 이러한 시책들을 지속적으로 하여 농어촌 구조개선 특별회계를 신설하여 그 지원체제도 개선해가고져 농어촌 구조개선 대책을 수립하여 92년도부터 적극 추진하고 있으나 농어촌 구조개선 내용 자체가 농촌을 중심으로 수립된 것이어서 농촌보다 입지적, 경제사회적 조

건이 열악하고 특수한 여건을 갖고 있는 어촌문제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대안이 없는 정책부재 그대로이며 현실적인 문제인식마저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있는 안타까운 실정이다.

間接資本施設 漁村 아직未治

어떻게 하면 낙도, 벽지 도서어촌에서 지선어민들이 특히 젊은 후계세대들이 어촌을 지키면서 계속 정주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해 줄 것인가 하는 문제의 해결은 농촌과 같은 도식과 접근방식으로서는 그 실효성을 거두기가 어렵기 때문에 국토유지 보존과 어촌유지 경영이라는 국가 정책적 차원에서 치밀한 도시계획에 의거 신도시를 건설하는 것과 같은 방식으로 추진되어야 할 것이다.

어촌문제는 낙도, 벽지 도서 지역 문제로서 교통이 불안정하고 불편하며 어촌사회 간접자본으로서 시·군의 일부 지원을 받아 지선민의 일부 자담과 노력부담으로 만들어진 소규모 어항시설이 있다고는 하나 전천후 정기 교통망을 체계화하는 기본 시설로서는 미흡하며 소형 어선이 이용하는데도 불편을 느낄 정도로 어촌사회 간접자본은 미비된 채로 있다.

현실적으로 우리어촌의 40% 이상을 차지하는 낙도, 벽지 도서어촌은 도시나 육지로부터 멀리 격리되어 있을뿐 아니라 뒤에는 경사가 급한 산으로 앞

漁村開發은 소규모 漁港擴充부터

施設 多樣化가 漁村을 유지發展

金 昇 <長興郡水協 專務>

에는 넓은 바다로 고립된 좁은 공간으로 단절되어 있어 수산물 가공산업 입지로서도 적정 규모에 미달하고 정주공간으로서도 협소하다. 오늘의 젊은 세대들은 농어촌과 1·2차 산업의 생산직에 종사하는 것을 기피하고 도시와 3차산업을 선호하는 추세이다.

이와같이 외부와 단절되고 고립된 공간과 교통, 전기, 의료 등 불편한 생활환경 속에서 설령 농촌보다 더 높은 소득이 보장된다 하더라도 일상생활 자체가 불편하고 생활환경이 열악한 어촌에서 계속 정주할 젊은이는 없을 것이다. 따라서 낙도, 벽지, 도서어촌 문제의 요체는 어항시설의 확충과 기능의 다양화로 지선민의 일상생활에 불편이 없도록 전천후 정기 교통망 체계를 완비하여 고질성과 단절성을 최소화하는데 두어야 할 것이다.

이웃 일본의 경우 산업자본주의화 과정에서 필연적으로 예견되는 이도어촌의 공동화 현상을 미연에 방지하고 국토의 균형적인 발전과 본토로부터 격리되어 국토의 가장자리에 위치한 이도어촌의 유지보존을 위해 국가 정책적 차원에서 당해 지선민만이 이용하는 소규모 어항도 어항법상 제1종 어항으로 지정하여 개발 관리토록 하고 어항의 기능도 당해 지선민의 어촌 정주여건 조성의 핵심요체인 전천후 정기 교통망 체계를 구축하는 기본 시설로서 헬기장을 포함한 넓은

어항구역의 확보와 각종 복지편익시설을 확충하여 좁은 의미의 어항기능 외에 다각적이고 종합적인 기능을 수행할 수 있도록 제도화하였다. (표 1참조)

그리고 이러한 정부시책을 효율적으로 추진키 위해 이도진흥법 등 권역별로 이도개발을 촉진하는 관계법령의 제정과 총리부 고시로 이도를 지정 (표2참조)하여 최우선 중점 개발함으로써 지난 3~40년 동안에 전 이도어촌을 교통 전기, 의료, 교육등 일상생활의 기본수요가 농촌보다 훨씬 더 충족될 수 있도록 어촌사회 간접자본과 문화·복지편익시설이 갖추어진 쾌적하고 살기좋은 어촌생활환경 속에서 연안어장의 목장화, 수산물 가공산업과 지역특산물 육성, 이도어촌의 관광자원화등 다양한 어촌 소득원이 개발되어 지선민들이 이

도어촌에서 일상생활하는데 아무 불편이 없는 만족스러운 생활환경 속에서 적정수준의 소득이 보장되어 오히려 이도어촌에서 사는 것을 보람으로 여기고 있는 실정이다. 이와같이 어항시설을 모체로하여 어촌문제를 풀어가는 이도어촌 개발 전략이 본토 연안어촌에까지 확대 시행되어 활력이 넘치는 풍요롭고 복지로운 오늘의 선진일본 어촌을 만들어 냈을 것이다.

지난 88년 10월 필자가 일본 벽지, 도서어촌을 돌아볼 기회가 있어 유심히 관찰해 본 결과 우리는 생각도 미치지 못할 지선민만이 이용하는 소규모 어항을 제1종 어항으로 지정하여 최우선 확대개발과 그 기능을 다양화함으로써 그 어항시설이 모체가 되어 어촌문제의 모든 것이 해결되고 있음을 발

(표 1) 어항법상 어항의 종류(일본)

일	본	한 국
제1종 어항	지선민만이 주로 이용하는 소규모 어항	어항법상 비규정
제2종 어항	縣단위 지역어민들이 이용하는 중규모 어항	제2종 어항에 해당
제3종 어항	전국 어민들이 이용하는 대규모어항	제1종어항에 해당
제4종 어항	전국 어민이 이용하는 낙도벽지 어업근거지의 중규모 어항	제3종 어항에 해당

(표 2) 離島指定現況

소화62년(1987. 4. 1) 현재

관 계 법 령	제정년도	지정부처	지정어도수
계			388
離島 진흥법	소화28년 법률 제72호	총리부고시	288
小笠原諸島 진흥특별조치법	소화44년 법률 제79호	"	2
奄美群島 진흥개발특별조치법	소화 29년 법률 제189호	"	8
沖繩진흥개발특별조치법	소화46년 법률 제131호	"	40

* 자료 : 離島 통계년보(19988)

견할 수 있었다.

농림수산부 당국은 1992년을 농어촌 개발의 일대 전기를 마련하는 해로 중요한 의미를 부여하고 있다. 금년이 농어촌 구조 개선사업을 시행하는 원년으로 동사업이 적극적으로 추진된다면 농촌에는 어느 정도 희생의 바람이 불면서 장기적으로 활력을 되찾게 되리라 보지만, 어촌에 대해서는 당국의 농어촌 구조 개선대책으로는 희생이 불가하고 부정적인 회의감마저 느껴지는 것은 필자만이 느끼는 감정은 아닐 것이다.

우리나라도 과거 산업화 과정에서 어촌(어민)과 연안어업에 피해를 주면서 근·원양어업의 개발이 이루어진 이중 구조하에서 발생한 어촌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수산업 진흥을 효율성 제고에만 기준을 두고 추구했던 산업정책을 어촌 및 연안어업 안정과 어민 복지증대를 도모하기 위한 어촌개발 정책에 의해 뒷받침되는 산업정책으로 전환시켜야 할 시기가 도래되었다고 본다. 붕괴위기에 처한 어촌문제는 우리나라의 맨끝 변방에 위치한

낙도·벽지·도서지역의 문제로서 일본과 같이 어항시설의 확충과 기능의 다양화에서 문제해결의 실마리를 찾아야 할 것이다.

漁港개념 바뀌져야 어촌 發展據點으로

이제까지 어항하면 단순히 어업 전진기지항이나 긴급대피항과 같이 어촌·어민보다는 바다의 효율적 이용과 통제 위주로 개발하고 관리되어 왔으나 금후 개발방향은 어촌 어민의 유지보존과 국토의 유지 균형발전 차원에서 어항에 대한 새로운 개념정립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우리나라의 어항수와 어항의 종류는 표3에서 보는 바와같이 현재 어항법으로 지정하여 수산청장이 관리하는 1·3종 어항 83개와 시·도지사가 관리하는 2종어항 316개 도합 399개항이 지정되어 있으며, 어항법으로는 지정되지 않았지만 일본의 제1종 어항에 해당하는 지선어민만이 주로 이용하는 소규모 항포구가 1,588개로서 전체항수 1,987개항의 80%를

점하고 있으나 이들 소규모 항은 앞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어촌 지역주민 숙원사업으로서 장기적인 안목이나 특별한 개발계획없이 우선 소형어선이 이용할 수 있도록 시·군의 일부 지원과 지선민의 일부자담에 노력부담으로 임시 만들어진 시설이므로 근본적으로 불편한 교통 및 일상생활환경 등을 개선하는 데는 크게 도움이 되지 못하고 있다는 사실에 대해 우리는 주목해야 할 것이다.

어항은 수산경제 활동과 어촌생활에 가장 중요한 기본시설로서 어촌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한다는 차원에서 연관효과 내지 파급효과가 극대화 될 수 있도록 어항시설을 확대 개발하고 그 기능을 다양화하지 않고서는 국토의 균형발전과 수산업, 어촌, 어민의 유지발전이 불가하므로 낙도, 벽지 도서어촌의 어민들의 생존과 직결되는 소규모 어항의 어항건설과 시설 확대개발을 통한 기능 다양화를 도모하기 위해서는 어항법하의 기본어항으로 지정하여 관리하는 문제가 심도있게 검토되어야 할 것이다.

일본의 이도진흥법을 참고하여 도서개발 촉진법을 제정 시행하고 농어촌 구조개선 대책을 수립하여 어촌문제를 해결하고자 시도하고 있으나 낙도, 벽지 도서어촌의 문제는, 근본적으로 꼬여있는 첫 실타래 부분이 풀리지 않는다면 그 실효성을 기대하기가 어렵다는 점을 강조하고 싶다. ㉠

(표 3) 어 항 현 황 (1992. 3월현재)

항수	어항법상 지정 어항					소규모 어항	비 고
	계	수 산 청 장			시, 도지사		
		소계	제1종어항	제3종어항			
1,987	399	83	50	33	316	1,596	소규모어항은 시장, 군수가 관리